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 저작권 문화

2017. 02. vol. 270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공급했던  
저작권 이야기

#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가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모든 경우에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 사이트 제작·유지 관리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건과 판례에 주목해보자[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1. 사실 관계

원고는 온라인 백과사전 운영자로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명칭을 '리그베다위키'로 변경하였다.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사이트의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소위 미러링(Mirrorin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수익을 올려왔다.

원고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 및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먼저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하여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의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며, 원·피고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피고 사이트를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해서도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광고 수익 등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사이트의 개설 운영에 관하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문제가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의 데이터는 대부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점, 색인까지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수정 편집할 수 있는 점, 프린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수정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과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로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이트의 설계, 검색엔진 개발 및 업데이트, 자료 접근성 향상 노력, 서버 관리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1심의 결론과 반대되는 것이다. 1심에서는 원고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버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들이는 등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1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부

정경쟁방지법 차목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주위적 청구로 인용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위반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목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다목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 3. 해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하고, 이들에게는 저작권법상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가 부여된다.

본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가 집적되는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위키사이트 등 UCC 사이트 운영자 모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이트 제작·유지 관리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대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최근 법원의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확대적용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범위 인정과는 함께 묶어 연구할 대상이다. 